

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 세무1과]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14호
- 나. 제 출 자 : 박찬길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1. 8. 24.
- 라.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건임.

3.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1)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감면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2)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3)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4)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세법」 제1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2호가목-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4)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1호다목-(중략)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제2호-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2호의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금지가 장기간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중 영업금지 된 경우
- 감면 적용연도 : 2021년 6월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하며 2022년 5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 감면율 :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금지된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 (건축물) 당초 1천분의 40 → 1천분의 2.5
 - (토 지) 당초 1천분의 40 → 1천분의 4
- 패널티 :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 하는 영업장은 감면제외

다.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25개구가 동일하게 감면기준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구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감면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일반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산세 세율을 경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신설하는 것임
-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이기에 타당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방역수칙 위반 업장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반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관계 법령 1부.

붙임

관련법령 및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 2020. 1. 15.>

지방세법

[시행 2021. 7. 8.] [법률 제18294호, 2021. 7. 8., 일부개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